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인재경영실 인사부

제정 2020. 09. 24. 규정 제4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안전관리 책무) 심사평가원의 임원은 직원과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문책의 사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임원을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제3조에서 정한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5조(임원문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원장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임원에 대한 문책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원문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5명의 위원(위원장 1명, 비상임이사 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에 대한 문책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한다.

⑤ 비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⑥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1.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
4. 심사평가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1급 또는 실장급 직위로 퇴직한 사람
5.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퇴직 임직원 포함)
6. 정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추천한 사람

제6조(문책의 종류와 효과) 문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해임
2. 연임제한
3. 업무배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출근 및 직무정지를 하고, 기본연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기본연봉 감액: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기본연봉 월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5호의 경고 3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
5. 경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당사자는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의: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원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문책의 절차) ① 원장은 임원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문책양정, 심의위원회의 심의·표결, 항고, 문책의 재심의 또는 재의결, 문책 처분의 집행, 문책의 시효, 포상자에 대한 문책감경, 문책의 면제 및 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는 “문책”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문책기준

관련법령 및 위반 의무		문책유형
1. 직영 및 도급		
산업안전 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	① 작업설비 등 부적절, 고장(규칙 제9조 등) ② 안전시설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1조 등) ③ 안전(방호)장치 미비, 부적절, 고장, 해제(규칙 제12조 등) ④ 작업지휘자·감시자 미배치, 부적절(규칙 제39조 등) ⑤ 위험상황 작업강행(규칙 제37조 등) ⑥ 대피조치 미흡, 부적절(규칙 제241조의2제1항 등) ⑦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법 제69조제1항·제2항)_도급인 ⑧ 설계변경·변경요청의무(법 제71조제3항 후단)_도급인	해임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① 비상구·소화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41조제1항제3호 등) ② 경보, 구호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11조제4호 등) ③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규칙 제36조 등) ④ 작업계획·점검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38조제1항 등) ⑤ 작업방법 부적절(규칙 제38조제3항 등) ⑥ 작업시간·기간 불충분(규칙 제421조제1항 등) ⑦ 무자격자·미숙련자 작업배치(규칙 제318조 등) ⑧ 작업지시·신호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40조 등) ⑨ 작업장(위험장소) 출입·이동방법 부적절(규칙 제11조 등) ⑩ 작업설비 등 용도 외, 부적절 사용(규칙 제96조 등) ⑪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89조 등) ⑫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법 제70조제2항후단)_도급인 ⑬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실시 (법 제64조제1항제5호)_도급인 ⑭ 도급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 (법 제65조제1항)_도급인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① 보호구 미지급, 부적절, 고장(규칙 제6조제2항 등) ② 안전표지 등 경고표시 미비, 부적절(규칙 제11조제5호 등) ③ 보호구 미착용, 성능 미달 보호구(규칙 제6조제3항 등) ④ 작업수칙·지시 위반(규칙 제436조 등) ⑤ 전도 방지 미조치(규칙 제3조 등)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2. 발주		
산업안전 보건법	①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제69조 제1항·제2항) ② 설계변경의무(제71조제4항) ③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제70조제1항) ④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제68조제1항) ⑤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공, 확인의무(제67조제1항)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건설기술 진흥법	①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무 위반(법 제39조의2 등) ②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시행(법 제62조 등) ③ 안전관리계획 승인규정 위반(법 제62조 등) ④ 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위반(법 제63조 등) ⑤ 건설사업관리계획 준수 불가시 착공금지 의무 위반(법 제39조의 2 등)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⑥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의무 위반(법 제62조 등) ⑦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확인의무 위반(법 제63조 등) ⑧ 안전관리조직 구성 의무 위반(법 제64조 등)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건설산업 기본법	①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위반(법 제29조의2 등) ② 건설공사 참여제한 하수급인 변경요구 의무 위반(법 제29조의3 등)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무 위반(법 제31조 등)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전기 공사업법	①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조 등)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② 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등)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전기 사업법	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73조 등) ② 사용전검사 합격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63조 등) ③ (사업용·자가용)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71조 등) ④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65조 등) ⑤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73조 등)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⑥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66조 등) ⑦ (일반용)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71조 등) ⑧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73조의3 등) ⑨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73조의8 등) ⑩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73조의4 등)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전력기술 관리법	①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조 등) ②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등)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11조 및 제12조 등)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④ 감리원 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의2 등) ⑤ 감리원 배치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2 등)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정보통신 공사업법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소방 공사업법		
대형사고 등	① 단일 사고 사망자 3명 이상 ② 단일 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임
※ 비고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무관 ②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경고 3회 이상 누적 시 기본연봉 감액 ③ 업무배제는 기본급 감액 포함하며, 연임제한은 업무배제를 병과 ④ 문책유형은 다음을 고려하여 가중·감경사유 등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이 다수 중복되는 경우 ■ 동시 2명 이상 사망, 전년 대비 증가 등의 경우 ■ 최근 1년 내 조치를 2회 받은 경우 ■ 임원이 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및 조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등 고려 		